

Korean Tax Update

January 2021, Issue 79

[조세뉴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21.1.28. 국회에 제출되었음. 이번 개정안에는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2020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임.

[판례]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에는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었던 경우,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3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 두 65538 판결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바,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었던 A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주와 구주를 취득함으로써 A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된 이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환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전환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 두 62716 판결

-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두5646),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당시 FT 는 휴·폐업 중인 법인, GFT 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순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휴·폐업 중인 법인이나 신설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심판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심판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서 3015, 2020. 11. 12.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소득금액보다 커서 이월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월공제 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공제한도 미달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그 이월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포함하여 그 공제 후의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고, 설령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경정 등을 하는 경우 그 경정 등에 대하여 불복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세액(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9 서 3713, 2020. 11. 26.

- 쟁점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한국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은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국 과세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국가 간 조세조약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과세권 충돌(이중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지국 과세의 예외로 규정한 조문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양측 모두 과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세조약의 본질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ECD 모델 조세조약(제23조 주석 9호 및 10호)에서는 거주지국(중국)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한국)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경우 거주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거주지국(중국)에서 전체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전체 소득을 합산·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범위는 외국법인의 "외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거주지국과 사업장 소재지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쟁점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서 2469, 2020. 12. 2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익적인 설립목적 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쟁점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되었고 재산출연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으로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쟁점재단이 허위작성문서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청구법인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청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원시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의 요

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하여 설립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9두 39611)한 바, 쟁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의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중 2798, 2020. 12. 29.

-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 바, 2014~2017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위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호 및 관련 시행규칙 제10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9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범위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도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사주와 금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비교하여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조특법 제 24 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9 전 4414, 2021. 1. 8.

- 중고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하고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설치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제작 목적에 따라 사용한 중고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확인서 및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쟁점설비는 '미완성 상태'로서 그 제작 목적(강관 제작용)에 따라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설비에 대한 설비보완 및 개조 후에야 본격적인 강관 제품 양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설비 시운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강관은 완제품이 아니라 공정 진행(1단계 성형 과정) 중에 있는 반제품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A 가 쟁점설비를 강관 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용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쟁점설비의 생산능력에 비해 주식회사 A의 쟁점설비 보유기간 매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회사 A는 당초 쟁점설비가 '개발 중 자산'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설비를 매각한 이후 소급하여 이를 인식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매입 후 공시자료인 사업보고서에 '진행 중인 투자'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쟁점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심사-소득-2020-0085, 2020. 10. 14.

-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그에 대해 무신고나 신고누락이 있다면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모두 부정행위로 인한 중과규정(10년,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건 소득세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니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문제일 뿐 이므로, 비록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와 같이 10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만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추가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예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시, 감면대상 과세표준액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2846, 2020. 11.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 조의 4 제 1 항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이나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내진성능 확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직·간접비용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결손 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2020. 12. 9.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2 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7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23 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중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및 부동산 매각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2020. 12. 17.

-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철거 목적의 건물(이하 “부동산”)을 취득하며 거래가액을 전액 토지가액으로 하여 취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중단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수수료, 사업성평가 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계비, 신축공사 타절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 제 1 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해당 비용 중 부동산의 취득 및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9 조 제 1 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각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 4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 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직전 3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공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2020. 12. 21.

-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회계감사 시 해당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 천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2020. 12. 23.

-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 6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6 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2021. 1. 13.

-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 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 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 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 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삼성 KPMG 조세본부 소식]

[기고] BUSINESS Watch, 세금의 시간을 되돌린 대가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Director (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20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